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5. 4. .

제출자 : 하남시장

1. 제안이유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 운용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 변경
(안 제1조, 제2조)

3. 개정조례안: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임

6. 예산수반 사항: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 기간: 2025. 2. 25.~2025. 3. 17. [20일간]

나. 의견 내용: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해당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의견없음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원안 동의

9. 참고사항: 해당없음

10. 관련부서 :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8조의3” 을 “제18조의7” 로 한다.

제2조 중 “제18조의3” 을 “제18조의7”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복지정책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팀장 직위·성명	생활보장팀장 김윤정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김현서 (790-534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 ----- ----- -----.</p>
<p>제2조(기금의 조성)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18조의3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하남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p>	<p>제2조(기금의 조성) ----- ----- ----- 한다) 제18조의7에 따라 ----- ----- ----- -----.</p>

관계법령 발췌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25. 3. 21.] [법령 제20446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개정 2019. 1. 15.>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9. 1. 15.>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11로 이동 <2021. 7. 27.>]